

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환경정책과)

제출일 : 2022. 7.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(2021. 4. 1. 시행)에 따라, 「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중 용어 정비 및 불일치 수정

2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(안 제5조 ~ 제19조)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인용 조항 불일치 수정 (안 제17조 ~ 제19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, 법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사항으로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